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. 12. 2.  
사회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24년 11월 8일
- 나. 제출자: 영등포구청장
- 다. 회부일자: 2024년 11월 15일
- 라. 상정일자: 제257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 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4. 11. 21.) 상정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김일호 도시국장)

### 가. 제안이유

- 세출 예산 항목에 구청장이 건축물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특별회계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2024년 12월 31일로 건축안전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 항목 추가 (안 제5조제3호)
- 건축안전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(안 제8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이수형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 도래하고, 세출 항목의 추가로 관내 건축물 안전을 위한 특별회계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 - 안 제5조제3호는 구청장이 지역 내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신설하였고,
  - 안 제8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“2024년 12월 31일”에서 “2029년 12월 31일”로 5년 연장함
- 검토 결과
  - 안 제5조의제3호 신설 규정은 상위법인 「건축법」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서 특별회계의 사용 용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「서울특별시 건축 조례」 제50조제4항에도 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  - 안 제8조의 건축안전특별회계 존속기한의 연장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4항 및 본 조례 제8조에 의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의 수행이 구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사료됨.
  - 한편 서울시에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등이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자치구는 20개 자치구로 파악됨.
  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안전을 위한 사업 수행의 범위를 확대 및 강화하고 노후 건축물 및 지진·화재·공사장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업무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### 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454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4. 11. .  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 예산 항목에 “구청장이 건축물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”을 추가하고, 존속기한이 2024.12.31.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지역 내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 항목 추가(안 제5조제3호)

1)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내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

나. 건축안전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(안 제8조)

1) “2024년 12월 31일”을 “2029년 12월 31일”로 변경(5년 연장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건축법」, 「서울특별시 건축 조례」 및 「지방재정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 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·인권영향평가: 원안 동의

3) 성별영향분석평가: 제출 제외 대상

라. 입법예고(2024. 10. 10. ~ 10. 30. / 21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내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

제8조 중 “2024년 12월 31일”을 “2029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세출)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5조(세출)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내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</u></p>
<p>제8조(존속기한)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<u>2024년 12월 31일까지</u>로 하되,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제8조(존속기한) ----- ----- <u>2029년 12월 31일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